

2022년 2월 11일부터는 이렇게 달라져요!

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 12조 개정

외출 시 목줄·가슴줄 길이는
2m 이내로 유지



산책 중 발생할 수 있는
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
목줄을 항상 2m 이내로 유지해주세요

다중주택, 다가구주택 및
공동주택의
내부 공용공간에서는
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기



엘리베이터, 복도, 계단 등 실내공간에서는
반려견을 직접 안아주세요
중대형견 등과 같이 안기 어려운 경우에는
목걸이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
동물을 통제해주세요

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(1차 20만원, 2차 30만원, 3차이상 50만원)

반려견 핏티켓 사랑하는 만큼 지켜주세요

1



반려견 입양 시
동물등록하기

2



등록정보
변경 시
변경신고하기

3



외출 시 인신포 및
목줄·가슴줄
착용하기
(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)

4



실내 공용공간에서는
특히 목줄·가슴줄
짧게 잡기

5



반려견 배변 시
즉시 수거하기



농림축산식품부


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